

의정부 금신로 - 주내면 마천리간 도로와 의정부 비선거리 - 남방리간 도로등은 모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의회 의견을 표명함.

【 17 】 광적도시계획시설(하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견

제출년월일 : 1993. 11. 6

제출자 : 양주군수

제안이유

경기도고시 제144호 ('87.5.27)로 결정 고시되고 경기도고시 제322호 ('87.11.24)로 지적고시 된 도시계획시설 중 가남리 하천(신천) 계획폭이 승리교 상류보다 하류가 하천 계획폭이 협소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예상되는 등 하폭이 불합리하여 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하천)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코자 함.

주요골자

○ 대상구역 : 양주군 광적면 가남리 하천(신천)

○ 도시계획시설 변경조서

구 분	형 태		위 치		면 적 (m ²)	중 간 (m ²)	비 고
	시설	번호	시 점	종 점			
당 초	하천	2	석우리 47-3	가남리 648-1	144,200		경기도고시 제 332 호
변 경	"	3	석우리 47-3	가남리 648-1	151,540	(증) 7,340	

광적도시계획시설(하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양주군수가 제출한 광적도시계획시설(하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도시 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제4호에 의거 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광적도시계획시설(하천)변경결정에관한의회의견

광적도시계획시설(하천)중 가납리 신천에 위치한 승리교 상류의 하천폭이 65m인 반면 하류의 하천폭이 56m로 계획되어 있어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불합리한 하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의회 의견을 표명함.

【 18 】 제22회의회임시회의사일정

년 월 일시	차수	안 건	비 고
93. 11. 9(화) 10 : 00		◦ 개회식 1. 제22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양주군위생처리장운영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 의견 5. 양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6.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7. 양주군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사회 : 의사계장 부군수, 각실과소장 참석 의장제의 회의록서명 의원선출 우충국의원외 2인 발의 제안설명 : 우충국의원 의장제의 특위위원장 보고 질의, 답변, 의결 제안설명 : 기획실장 질의, 답변, 의결 ” (일괄상정) 제안설명 : 내무과장
	1		